

# 서울고등법원

## 제 11 행정부

[2019누60365]

사 건 명 : 채무부존재 확인  
원 고 : 원고1  
전남 완도군 이하 생략  
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

피 고 : 수협중앙회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 
담당변호사 변호사2

변론 종결 : 2020. 5. 13

판결 선고 : 2020. 6. 10

#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

#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#### 1. 청구취지

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문 별지1 표 기재 어선원보험료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.

#### 2. 항소 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 이 유

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(각 별지를 포함 하되, '3. 결론' 부분 제외)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『피고는 ' 원고가 2008. 7.경 이 사건 어선원보험의 보험료를 두 차례 납부 하여 위 보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점, 원고가 전남 ○○군 ○○읍 ○○리 ○ ○○ 주소지에 전입신고하기 이전에 위 주소를 발송 장소로 하여 발송된 2009. 10. 16.자 자진납부서의 등기우편을 송달받았으므로, 원고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며 납부서를 송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어선원보험료 납부서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' 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① 설령 원고가 2008. 7.경 이 사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,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로부터 7개월 이상 이 지난 후부터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납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, ② 오히려 원고는 2008. 12. 31.자로 이 사건 어선원보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및 ③ 우편물의 송달 여부는 각 우편물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,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80여 개 이상의 우편물 중 하나의 우 편물이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나머지 우편물도 송달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어선 원보험료 납부서를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고, 이는 원고와 피고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.』

○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『3) 별지2 표 기재 납입독촉장 중 2011. 4. 2.자 납입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수취거절을 이유로 반송되었는데, 피고는 '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납입독촉장의 수령을 거절한 것이므로,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

보아야 한다'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(갑 제7호증)의 기재에 의하면, 위 납입독촉장이 발송된 무렵 원고는 납입독촉장의 발송주소인 전남 ○○군 ○○읍 ○○리 ○○○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,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납입독촉장의 수취를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납입독촉장의 발송주소에 원고의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, 그들이 위 발송주소에서 원고와 생활을 같이하며 거주하였다거나, 그들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 납입독촉장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(따라서 위 납입독촉장이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).』

○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6행의 "3)"을 "4)"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각주 1) 첫 행의 "변론 종결 이후 피고가 제출한 자진납부서 양식"을 "자진납부서 양식(을 제8호증의 4)"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『5)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송달된 자진납부서는 독촉절차에서의 독촉장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부과처분의 '부과처분서'의 성질도 아울러 갖는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진납부서는 독촉절차에서의 독촉장의 성질을 갖는데, 어선원재해보험법 제45조는 어선원보험료 징수금의 통지와 독촉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(피고 또한 2019. 6. 3.자 준비서면 등에서의 '어선원보험료의 부과에 관하여 ㉠납부서 ㉡납입고지서 ㉢납입독촉장 ㉣자진납부서 순으로 별도의 고지를 한다.'는 취지를 기재하였다), ②자진납부서에 선박명, 체납한 어선원보험료와 연체금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는 미납자에게 납부할 액수를 안내하고 그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일 뿐,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자진납부서에 부과처분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, ③자진납부서의 표제는 '자진납부 안내문'으로 되어 있고, 자진납부서의 내용 또한 이미 부과처분 된 어선원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안내, 독촉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및 ④피고의 주장과 같이 어선원보험료의 납입독촉장과 자진납부서 모두 부과처분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경우, 피고가 동일한 보험료 및 연체금에 관하여 수차례 부과처분을 반복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